

제8장 서비스무역

제8.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 가.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 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진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그리고
 - 다. 상업적 주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에 의한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말한다.
 -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 그리고
 -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 나.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부여방식과 관계없이 항공 운항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항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 다. 해상운송서비스의 연안운송
 - 라. 제8.16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계속적 수령에 부과되는 조건, 또는
 - 마.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인 차원에서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 내로의 입국 또는 자국 내에서의 일시적인 체류를 규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¹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는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2조 내국민 대우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8.3조 최혜국 대우

1. 이 협정의 발효 후에,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동종의 상황에서 그 비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비당사국과의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이 협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을 하는 당사국과 혜택의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대우는 다음과 같은 협정 상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된 어떠한 특혜대우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기존의 비당사국과의 양자, 지역 또는 국제 협정, 또는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모든 양자 또는 복수국 간 협정

제8.4조 시장접근

¹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의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제8.20조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의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²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³
-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 바.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8.5조 추가적 약속

당사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8.6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² 당사국이 제8.20조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의 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로서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서비스 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경우에, 그 당사국은 이에 의하여 그러한 자본의 이동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당사국이 제8.20조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의 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이에 의하여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³ 이 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요건 및 자격
-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그리고
-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8.2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8.2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하고, 제8.4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8.4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장에 부속되어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7조 투명성

제14장(투명성)에 더하여,

-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 나. 당사국이 제14.1조(공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대상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둔다.

제8.8조 국내 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그러한 절차를 실행 가능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그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실제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나. 가호의 규정은 자국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의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개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마련한다. 그러한 규율은 그러한 요건들이 특히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5. 가.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4항에 따라 마련되는 각 분야별 규율이 발효될 때까지 당사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4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 그리고
 - 2) 그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당사국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 나. 당사국이 가호의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련 국제기구⁴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6.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충분한 절차를 규정한다.

⁴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적어도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 기구를 지칭한다.

제8.9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각국의 표준 또는 기준을 충족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또는 관련 권한 있는 기관 간의 협정 또는 약정에 근거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경험·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3.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자국의 기존 인정 조치를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며,

나.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교섭이 실질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이 그 교섭에의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사전에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교섭의 개시를 공동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다. 새로운 인정 조치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인정 조치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공동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국제공통표준의 수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8.10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 장에 따른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는, 그리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제후 법인을 통하여 경쟁을 할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그러한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는 다른 쪽 당사국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는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나. 자국의 영역 내에서 그러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는 경우

제8.11조 영업 관행

1. 양 당사국은 제8.10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 관행 외의 서비스 공급자의 일정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하 “요청당사국”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하 “피요청당사국”이라 한다)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피요청당사국은 또한 자국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요청당사국에 의한 해당 정보의 비밀성 보호와 관련된 합의를 조건으로, 그 밖의 입수 가능한 정보도 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제8.12조 지급 및 송금⁵

1. 제8.13조에 상정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급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사용을 포함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9-다(송금)는 이 조에 적용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제8.13조나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거래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어떠한 자본거래에 대하여도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3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GATS 제12조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이나 이에 대한 변경은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다.

제8.14조 혜택의 부인

1. 당사국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내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입증할 경우, 해당 서비스의 공급
 - 나.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우로서, 부인하는 당사국이
 - 1) 비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 2) 비당사국의 인이 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하거나 사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 다. 부인하는 당사국이,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
2.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그 법인이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또는
 - 나. 그 법인이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8.15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협의

이 장의 이행이 당사국의 서비스 분야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분야에 관한 조치를 논의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취하여지는 어떠한 조치도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다. 다른 쪽 당사국은 특정 사안의 상황을 고려하고 조치를 취하려는 당사국에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8.16조 보조금

1. 당사국의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가 이 장에 따라 약속된 서비스무역에 중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이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 장에 따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약속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8.17조 양허표의 수정

1. 당사국은 약속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가. 그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개월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보한다. 그리고

나. 필요한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보상조정을 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상 이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아니한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보장한다.

제8.18조 그 밖의 조항

부속서 8-가부터 8-라까지, 그리고 이 장에 따라 합의될 모든 장래의 법률 문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19조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

1. 이 협정의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네거티브 목록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을 비준할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하여 서비스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장과 부속서들을 재협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그리고 각 당사국의 국내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양 당사국은 1년 이내에 협상을 종료할 것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한다.
3.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분야에 있어서 양 당사국 간 혜택의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협상을 행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국은 협상에서 이 협정의 자유화 약속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5장(분쟁 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20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 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업적 주재란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아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나.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나. 상업적 주체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 1)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 2) 가호에 명시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

법인은,

- 1)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 2)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지배**된다. 또는
- 3)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독점 서비스 공급자란 당사국 영역 내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서비스 분야란 다음을 말한다.

- 가.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서는,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서비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모든 하위 분야, 또는
- 나. 그 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하위 분야 모두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 전체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비스는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용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 나.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⁶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서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 다.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또는
- 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운송권이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 내에서, 또는 영역 상공으로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운항하거나 여객, 화물 및 우편을 운송하는 정기적 및 비정기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운항지점, 취항항로, 운송대상의 형태, 운송능력, 부과금 및 조건, 그리고 항공사의 수, 소유권 및 지배를 포함한 항공사의 지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다.

⁶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이 장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확장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다른 부분에까지 확장될 필요는 없다.